
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8. 24.(화) 배포</p>			
보도일	<p>2021. 8. 24.(화) 국무회의 시작 시(10:0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8. 24.(화) 국무회의 시작 시(10:00)부터 보도 가능</p>				
담당과	양성평등정책담당관	담당자	과장 사무관 주무관	장인자 양서연 류경연	(☎ 044-203-7112) (☎ 044-203-7115) (☎ 044-203-7109)

「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」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◆ '학교교육 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'을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8월 24일(화)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「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」 일부개정안을 심의·의결하였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인 학교 내 성희롱·성폭력 사안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,
 - '학교교육 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'에 전문성과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심의기구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것이다.
- 「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」 개정에 따라, 앞으로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(이하 심의회)가 '학교교육 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'을 심의하게 된다.

<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요 >

- ▶ (운영근거) 「교육기본법」제17조의2(남녀평등교육의 증진)
- ▶ (위원) 정부위원 5명,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(총 20명) ▶ (임기) 2년
- ▶ (기능)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, 교육과정 등 관련 사항을 심의(2000년~)

□ 「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」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'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및 예방'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,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
-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'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'와 '학교교육 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'를 두도록 하였다.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기능)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남녀평등교육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⇒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기능)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남녀평등교육증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학교 내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심의 ▶ (분과위원회) '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'와 '학교교육 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'를 구성하여 각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사전 검토 및 심의 가능

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심의회에서 학교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및 예방 정책을 양성평등교육과 연계하여 심의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.”라고 말하면서

- “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 내 성희롱·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멈춤 없이 추진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.”라고 강조하였다.

【붙임】 「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」 일부개정안



대통령령 제 호

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

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
5의3. 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분과위원회)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(이하 “분과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: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조정
2.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: 제2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에 따른 심의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조정

② 분과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(이하 “분과위원회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각각 구성한다. 이

경우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.

③ 분과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분과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분과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⑤ 분과위원장의 직무와 분과위원회의 회의, 의견청취 및 수당·여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·제3항, 제6조제3항·제4항,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위원장”은 “분과위원장”으로, “심의회”는 “분과위원회”로, “위원”은 “분과위원회위원”으로 본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7조 중 “전문가”를 “공무원 또는 전문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기능) 남녀평등교육심의회 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의2. 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</u> <u>· 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</u> <u>한 교육정책 추진 및 제도 개</u> <u>선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5의3. 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</u> <u>· 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</u> <u>한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</u> <u>사항</u>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6조의2(분과위원회) ① 심의회</u> <u>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</u> <u>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</u> <u>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(이하</u> <u>“분과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<u>1.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</u> <u>회: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</u> <u>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사항</u> <u>의 사전 검토 및 조정</u></p> <p><u>2.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·성폭</u> <u>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:</u></p>

제2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에
따른 심의 사항의 사전 검토
및 조정

② 분과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
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 중에서
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(이하
“분과위원회위원”이라 한다)으
로 각각 구성한다. 이 경우 제3
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각
분과위원회위원을 겸임할 수 있
다.

③ 분과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분
과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분과위
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
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
그 의장이 된다.

⑤ 분과위원장의 직무와 분과위
원회의 회의, 의견청취 및 수당
· 여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
· 제3항, 제6조제3항·제4항,
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. 이
경우 “위원장”은 “분과위원장”
으로, “심의회”는 “분과위원회”
로, “위원”은 “분과위원회위원”
으로 본다.

제7조(의견청취) 위원장은 상정된
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
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
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
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
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
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
정한다.

제7조(의견청취) -----

----- 공
무원 또는 전문가-----
-----.